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재산 처분 전 상임위원회 의결 의무화〉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5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유재산 처분 전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안 제9조제4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8.

다.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국유재산 처분 전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신설>	○ 국유재산 처분 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안 제9조제4항)

국유재산이란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지식재산¹⁾ 등이 포함됨.

2024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은 토지 627조 8,016억원, 공작물 339조 5,981억원 등 총 1,344조 4,991억원으로, 2023년 대비 24조 6,049억원 감소함.

1)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유재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종류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지	km ²	25,455	6,289,957	25,521	6,278,016
건물	km ²	94	727,292	94	739,655
공작물			3,373,711		3,395,981
입목죽			80,058		81,754
선박 및 항공기			29,954		33,314
기계기구			7,385		6,014
유가증권			3,160,520		2,889,162
무체재산	건	8,324,675	22,164	8,394,208	21,095
합계		-	13,691,041	-	13,444,991

자료: 통계청 KOSIS

‘국유재산의 처분’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²⁾을 의미하며, 처분 계획은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하여 확정됨.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청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 계획으로,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주요 정책 과제,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처분 기준, 특례 계획 등을 포함함.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한 처분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수요 여부, 국유재산 보존 필요성, 미활용 상태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각 등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종합

2)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다음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³⁾.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절차]

- ①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지침 통보(매년 4월말)
 -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 작성지침, 특례운용계획 작성지침
- ② (각 중앙관서) 중앙관서별 관리·처분계획, 특례운용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6월말)
- ③ (재정경제부) 각 중앙관서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계획 마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차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8월말)
- ④ (재정경제부) 확정된 다음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하고, 각 중앙관서에 통보

- 3)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과 달리 국유재산 매각·매입 실적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국유재산 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회 차원의 사후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 계획액은 33조 3,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처분 실적은 7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처분 실적이 처분 계획을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처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국유재산 처분 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분 계획액	303,373	294,319	307,350	344,607	332,684
처분 실적	470,174	573,847	531,781	461,420	786,196
차액	155%	195%	173%	134%	236%

자료: 「국유재산종합계획」

개정안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총괄 계획’만 포함되어 국회의 심의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 규모 및 명세’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처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매각은 시장 상황 및 매입 수요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다음 연도에 처분할 국유재산 목록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며, 일반회계 재산의 경우 연도별 매각 건수가 평균 6,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사전의결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연도별 일반회계 재산 매각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기준)
매각 건수	3,836	4,371	7,475	8,771	6,425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국유재산에 대한 구체적 처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행정 적시성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5432호)」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2025.12.4.)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 ② (생략)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다만,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④ ----- ----- . 1. (현행과 같음) 2. -----계획(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 및 명세를 포함한다)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60